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30일, 임태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6.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2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태영 의원)

현행법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고, 평시에는 산림보호, 벌채, 병해충 방제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임도 설치를 위한 재정확보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설치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임도의 설치 확대를 포함하는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재금)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10년마다 임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임도의 설치 및 관리현황 등의 사항을 포함한 전국임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림자원법 시행규

칙」 제5조제4항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임도 우선설치 계획 등을 포함한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6조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제출된 임도설치계획에 대하여 임도 설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5년 단위의 연도별 임도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임도의 계획제도가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및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임도설치 장기계획의 수립 주체가 되는 관계 기관에 대한 구속력 및 실효성이 저하되는 등 임도 확충에 애로사항이 있어 보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도계획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임도 설치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한 산림청장의 노력 의무 규정을 통해 임도계획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존 임도계획제도와 관련하여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에서는 임도의 설치 및 관리, 임도설치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안 제9조의2 제목 및 제1항 중 “임도(의) 확대 및 관리”를 “임도(의) 설치 및 관리”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과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